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72

발의연월일: 2021. 7. 27.

발 의 자:권칠승·강병원·강준현

고영인 • 고용진 • 김민석

민병덕 • 박상혁 • 임호선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타 세제 지원을 적용받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공제율이 현저히 낮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의 제작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해외 제작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등 이용 시장 붕괴, 제작 중단, 투자 위축 등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의 침체 상황이 가속화·장기화 되고 있 고,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의 제작사가 약 70%일 만큼 영세성이 강하여 타격이 심화된 상황으로, 동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더욱이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제작비용,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을 해외 제작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8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을 "내국인(「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다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부가통신역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이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동영상 콘텐츠"로, "국내에서"를 "국내·외에서"로, "100분의 3"을 "100분의 6"으로, "100분의7"을 "100분의 14"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방송되거나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을 "방송, 상영 또는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 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 정 아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전기통 신사업법 _ 제2조제14호다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 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 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포함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송프로그램, 영화 및 동영상 콘 ----국내·외에서----------100분의 6----------100분의 14--------100분의 2 상영 또는 제공된-----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
	<u>텐츠</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